

## 수영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

수영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에 신규 아이돌보미 활동자를 모집·양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1년 7월 19일

### 1. 응시자격

- 수영구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
  - 우선채용 :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소지자, 1일 평균 2~4시간 단시간 활동 가능한 자, 15:30~19:30 활동 가능한 자, 영아(36개월 이하) 돌봄 가능한 자
- ※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치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

#### \*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(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)
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2. 정신질환자
3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의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의3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의4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
9.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## 2. 채용방법

- 가. 1차 : 서류전형 -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
- 나. 2차 : 인·적성 검사(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)
- 다. 3차 : 면접시험 - 해당 분야 전문성, 수행능력, 적격성 및 기본소양  
(1차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며, 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지함)
- 라.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, 기본증명서, 통장사본, 건강진단서 각 1부  
※ B형 간염, 결핵 등 전염성 질병 및 정신질환 (「정신질환자나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」문구 포함) 제출

## 3. 응시원서접수처 및 접수방법

- 가. 공고기간 : 2021. 7. 19.(월) ~ 2021. 8. 9.(월)
- 나. 접수기간 : 2021. 7. 19.(월) ~ 2021. 8. 9.(월) 18시까지
- 다. 모집인원 : 15명 내외
- 라. 접수방법 :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(방문 접수 불가)  
▶ 접수 홈페이지 : care.idolbom.go.kr

## 4. 제출서류

- ①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- 상단 첨부파일 참조
- 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 서류(해당자에 한함)
  - ※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.
  - ※ 양성교육 감면 대상
   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: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(1~3급)
    -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: 유치원 정교사(1급·2급), 준교사
   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: 정교사(1급·2급), 준교사, 전문상담교사(1급·2급), 사서교사(1급·2급), 보건교사(1급·2급), 영양교사(1급·2급)
    -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: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

## 5. 인·적성검사 일정 및 면접일정

- 추후공지 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)

## 6.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안내

- 교육일정 : 2021. 9. 2.(목) ~ 2021. 9. 17.(금) / 13일간
- 교육방법 :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
- 교육시간 : 일반과정 - 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 단계별교육 80시간  
자격증소지자과정 - 기본교육과정 및 특화교육과정 16시간
- 교육비 : 일반 20만원(의무활동시간 이수 후 15만원 환급 조치)  
자격증 소지자 2만원  
교육 시작 후 교육 포기 시 환급 **절대 불가**
- 현장실습 : 9월 중 10~20시간(교육수료 후,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)

## 7. 아이돌보미 활동

- 활동시기 : 현장실습 이수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
- 아이돌보미 직무 (**가사활동 제외**)
  - 시간제 돌봄 활동 :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보육시설, 학교 등·하원, 안전·신변 보호 처리, 준비물 보조 등 아동의 학습 보조
  - 영아 종일제 돌봄 활동 : 이유식, 젖병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(건강, 영양, 위생 교육 등).

## 8. 기타사항(유의사항)

- 가. 합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- 나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채용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, 합격 후에도 채용이 취소됩니다.
- 다.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이 없을 시 파기처리 됩니다.
- 라. 이용신청이 집중되는 시간대로 인해 모집 시 활동 시간이 작을 수 있습니다.
- 마.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(T.758-6187)로 문의바랍니다.